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위상 · 신동욱 · 우재준
김태호 · 서명옥 · 최은석
김선교 · 신성범 · 추경호
이인선 · 김형동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방법·절차”를 “방법·절차, 영향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